

이천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

소관부서 : 교통정책과

제정 2016·10·13 조례 제1273호
일부개정 2017·5·1 조례 제1314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이천시 버스공영차고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7·5·1>

1. “버스공영차고지(이하 “공영차고지”라 한다)“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2조제1호에 따른 공영차고지로서 이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차고지(부속시설물을 포함한다)를 말한다.
2. 삭제 <2017·5·1>
3. “수탁자”란 공영차고지를 위탁받아 운영·관리하는 자를 말한다.
4. “사용자”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등록을 한 자(이하 “운송사업자”라 한다)와 버스에 연료 공급을 위한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(이하 “충전업체”라 한다) 및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5조의8에 따라 내압용기 재검사를 대행하는 자 중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공영차고지의 명칭 및 위치) 공영차고지는 이천시 율현동 553번지 일원에 두며, “이천시 버스 공영차고지”라 칭한다. <개정 2017·5·1>

제4조(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)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, 충전업체 및 내압용기 재검사를 대행하는 자 등에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

② 삭제 <2017·5·1>

③ 삭제 <2017·5·1>

④ 시장은 시 관할구역 안에서 시내버스 운수사업을 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 다만, 공영차고지의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 기점과 종점을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 <개

정 2017·5·1〉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위한 기준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5조(사용료)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에 입주하는 운송사업자, 충전업체 및 내압용기 재검사를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·징수한다.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체료를 부과한다.

② 공영차고지의 사용료는 해당재산에 대한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31조에 따라 산출된 재산평정 가격의 1천분의 25로 한다. <신설 2017·5·1〉

③ 제1항에 따라 부과된 사용료가 체납되었을 경우에는 「지방세기본법」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. <개정 2017·5·1〉

제6조(사용자의 의무) ① 사용자는 공영차고지 및 공영차고지에 설치된 시설(이하 “사용시설”이라 한다)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② 사용자는 사용시설 등의 파손, 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시설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즉시 시장에게 변상하거나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.

③ 사용자는 사용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를 하여야 한다.

제7조(사용자의 행위제한) 사용자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7·5·1〉

1. 시내버스, 마을버스등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 이외의 차량을 주차시키는 행위
2. 삭제 <2017·5·1〉
3. 「소방기본법」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
4. 환경관련법(「대기환경보전법」,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,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, 「폐기물관리법」)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

악취·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

5.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제한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

제8조(사용허가의 취소) 시장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5조에 따른 사용·수익허가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제9조(관리의 위탁)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공공 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관내 법인·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제4조에 따른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
2. 제6조제2항에 따른 보고, 복구비용의 징수 등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
3. 제7조에 따른 사용자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
4.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
5. 공영차고지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

제10조(업무감독 등) 시장은 차고지의 운영·관리에 필요한 경우 사용자 또는 수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차고지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,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1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7·5·1 조례 제1314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 공용차고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